

正祖代 『推案及鞫案』의 이두의 사용양상 연구

A study on the usage pattern of I-DO found in CHUAN GEUP GUKAN during King Jeongjo era

저자 (Authors) 유경민
Yu, Kyung-min

출처 (Source) [고전번역연구 8](#), 2017.12, 131-157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전번역학회](#)
Society for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lass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91930>

APA Style 유경민 (2017). 正祖代 『推案及鞫案』의 이두의 사용양상 연구. 고전번역연구, 8, 131-15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3 17: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正祖代 『推案及鞫案』의 이두의 사용양상 연구*

유경민**

1. 서론
2. 이두 목록의 대비
3. 『推案及鞫案』의 어미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선조 34년(1601)~고종 29년(1892)의 기간 동안 기록된 국가기록문서인 『推案及鞫案』을 국어학계에 소개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18세기 후반 正祖代의 『推案及鞫案』에서 확인되는 이두¹⁾의 목록을 『儒胥必知』의 『吏頭彙編』의 목록과 대비하여 供招記錄文의 이두 사용양상과 實用文의 이두 사용양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推案及鞫案』의 이두 사용양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 이 논문은 2017년 6월 24일에 있었던 한국고전번역학회 제16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의 “『推案及鞫案』의 번역 및 역주” 사업팀(2004-2014)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推案及鞫案』 정서화 및 DB기반 구축사업” 사업팀(2012)의 여러 선생님들과 연구책임을 맡으셨던 변주승(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님의 배려와 지원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김건우(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님의 조언으로 조선시대 공문서의 특징을 파악하며 『推案及鞫案』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당시 토론을 맡아 주셨던 한영균(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과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cherubyu@naver.com

1) 본고에서 ‘이두’는 구체적으로는 이두문(한국어 어순이 반영된 문장 구성)과 이두토(조사나 어미) 및 이두어(실질형태소)를 포함하는 개념어로 사용한다.

최종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국어사적 관점에서의 이두 연구는 주로 고대국어나 전기 중세 국어 자료의 해독을 위한 ‘이두의 판독과 해석’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것은 이두에 반영된 선대 국어의 내부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17세기~19세기에 걸쳐 작성된 巨帙의 官撰史料인 『推案及鞫案』의 이두는 행정적으로 관습화된 문서 양식의 틀 안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낱말의 독음과 판독보다는 서술부 표현과 관련된 이두의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推案及鞫案』, 이두, 사용양상, 국가기록문서, 한문, 국어사

1. 머리말

(1) 연구 목적

본고는 선조 34년(1601)~고종 29년(1892)까지 300여 년 동안 의금부에서 중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를 모은 『推案及鞫案』을 국어학계에 소개하는 것이 일차 목표이다. 나아가 『推案及鞫案』의 서술어 표현을 중심으로 관청에서 작성한 供招記錄文의 이두 사용양상(usage pattern)을 설명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2장에서 비슷한 시기의 다른 이두 문서의 양식 및 이두 목록과의 異同을 살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수행은 『推案及鞫案』이라는 문헌의 특징을 밝혀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推案及鞫案』에 쓰인 이두가 개별 요소보다는 문서 양식 혹은 문틀로서 활용되었음²⁾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推案及鞫案』은 규장각에³⁾ 소장되어 있는 331책의 巨帙로, 1983년 양

2)奴婢들의 이름 표기에 쓰인 이두는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장본 30권으로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1998년~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서강대학교에서 “『推案及鞫案』의 활용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 이루어져 그 목차와 상세 목록이 사건별로 정리가 된 바 있다. 또, 2004년~2014년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육성사업으로 전주대학교의 “『推案及鞫案』의 번역 및 역주” 사업이 선정되어 총 90권의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2012년 “『推案及鞫案』 정서화 및 DB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원문이 입력되어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CAB-1101>)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推案及鞫案』은 17세기~19세기의 근대국어 시기에 작성된 官撰 史料로서 한자, 한글, 이두가 혼용된⁴⁾ 국어학 자료인데, 그동안 국어학계에서는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推案及鞫案』에 대한 연구의 출발로서, 巨帙의 관찬 사료에 쓰인 이두의 사용양상을 어미 부분을 중심으로 살핀다.

지금까지 국어사적 관점에서의 이두 연구는 주로 고대국어나 전기 중세국어 자료의 해독을 위한 ‘이두의 판독과 해석’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한 연구는 이두에 반영된 선대 국어의 내부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1892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推案及鞫案』의 이두는 행정적으로 관습화된 문서의 양식으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낱말의 독음과 판독보다는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推案及鞫案』이 신문 과정과 문답 상황에 따른 문들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고, 특정 한문 어구에 일정한 이두를 공식처럼 결합한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검색일 2017. 11. 07)

4) 『推案及鞫案』에서 한글 표기 부분은 57회 확인되고, 중복 표현 및 유사 표현 5종이 확인된다. 한글로 표기된 예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노랫말, 외래어 고유명사 표기, 의성 부사, 의태 부사, 고유어 용언, 구절 표현 등으로 나뉜다. 『推案及鞫案』의 한글 표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른 지면으로 진행 중이다.

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보아 『推案及鞫案』에서 확인되는 조선 후기의 이두는 국가기록문서[公文書]의 일정한 서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相考慮置’ 뒤에는 항상 ‘敎事’이 쓰이고, ‘~推問’ 뒤에는 항상 ‘敎是臥乎在亦’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분석적 이두 연구가 아닌 套式으로서의 이두의 사용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2) 연구대상

『推案及鞫案』은 선조(1601)~고종(1892) 시기에 작성된 방대한 자료이지만 본고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正祖代(1777년~1796년)의 『推案及鞫案』을 대상으로 한다. 영인본 23-24권, 번역본 67-72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推案及鞫案』은 조선시대 중죄인의 조사 및 판결서를 모은 책인데⁵⁾, ‘推案’은 일반적인 審問[推問]의 과정을 담은 문서이고, ‘鞫案’은 고문이 수반된 審問[鞫問]의 과정을 담은 문서이다. 다른 역사서가 요약과 압축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것에 비하여 供招記錄文인 『推案及鞫案』은 ‘審問-刑訊-答辯’의 담화문 형태로 심문을 받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한 문서라는 점이 특징이다. 심문의 과정에서 생산된 텍스트로서, ‘화자-텍스트 생산자(청자, 吏胥)-독자(혹은 청자, 왕)’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일정한 企劃으로 편집되지 않은 문서(정광호 1975:119)로서 현장의 발화 및 대화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텍스트이기에 이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이나 구어적 요소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도 가능한 자료이다. 죄인 한 사람에 대한 심문 내용이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으며 심문이 진행되면서 왕의 리트이나 죄인 처형과 관련된 보고를 날짜에 따라 수록하였는데 일면을 보

5) 하급 관아인 포도청을 거쳐 의금부로 넘겨진 중죄인은 임시로 선정된 委官 및 刑房承旨와 文事郎廳의 신문을 받아 임금의 재가를 얻어 최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로, 추안 및 국안의 작성자는 관청의 吏胥 등이고, 독자는 임금으로 설정되어 작성되었다.

이면 다음과 같다.

崔天柱以報故更為推問則渠之前招自歸虛議是白如乎玉
 凡所刻不過前面雙童後面壽字則即是閭巷間尋常佩飾元
 非關於邪學之具此一欵雖無可以更覈而以其前後供招觀
 之若是虛妄則幸免後不為邪學之說必是誣罔請嚴刑得情
 道 啓所論未免失當請當該道臣推考 判付內依啓此等
 虛謊之事無難為言 不關於 邪有駭於聽聞楊根郡守當慶
 今矣 ○傳曰推鞠始嚴明也 而之

十七日推鞠時座目上同

同日推考次罪人李家煥年六十更推白等矣身前招中兵錫
 忠之傳法護神締結玉尊與否睦萬中當知之是如為有矣論

〈그림 1〉 날짜가 기입된 『推案及鞫案』의 예

내용별로 동일한 구조(죄인에 대한 정보-심문 내용-죄인의 진술 내용)

를 지니고 있고, 그 표현 문구도 반복된다. 텍스트의 시작과 구분은 ‘O’ 기호로 표시하였다⁶⁾. 과거 사건에 대하여 심문하는 텍스트의 특성상 과거 시제 표현이 많을 것 같으나 시제 표현이 엄격히 사용되지는 않았다. 한 문장 안에서 시제 의식 없이 ‘爲有去乙’과 ‘爲白去乙’이 쓰인 예도 많은데, 대개 죄인의 발화에는 과거 시제가 많이 쓰이고, 추문하리니, 왕이나 倭官의 명령에서는 ‘-臥-’가 쓰였다. 또, 이두문으로서의 『推案及鞫案』의 특징은 격조사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⁷⁾는 것이다. 이는 『推案及鞫案』이 처음부터 문헌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발화를 정서한 문서이기 때문에 구어의 특징인 조사의 생략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 『推案及鞫案』의 이두 목록과의 대비 대상으로 삼은 『吏頭彙編』⁸⁾은 이두문 쓰기 학습서인 『儒胥必知』에 부록으로 합철된 사전식 이두

6) 심사자 중에 ‘O’은 圈內와 圈外를 구분하는 白圈으로 보아야 한다고 수정을 요구하신 분이 계셨는데, 필자가 『推案及鞫案』을 본 바로는 꼭 권내와 권외, 본문과 주석을 구분하기보다는 단순히 텍스트의 시작이나 구분을 알리는 표시로서 기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논문을 위해 조언을 주신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는 것은 학문이 日淺한 필자의 책임이다.

7) 正祖代의 자료에 한정해 보았을 때 눈에 띄는 조사의 예로 부사격 조사를 들 수 있다. 장소나 시간과 관련된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良中’은 현대국어의 ‘에’에 해당하는 처소 부사격 조사로 두 개 확인이 된다. 또, 유정명사 뒤에 결합되어 수여(에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亦中’은 한 예가 확인되는데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ㄱ. 汝矣家【良中】三月初十日來見之人(3월 10일에 너희 집에 찾아와 만나 보았던 사람) ⇨ <원문23:625 번역본69:81>

ㄴ. 十九日【良中】吾兄以爲將往宿於汝家之說聞之而(3월 19일에 내 형으로부터 장차 너희 집에 가서 묵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 <원문23:733 번역본 69:245>

ㄷ. 捕校一人【亦中】準授已爲押送爲有去乎(포교 한 사람에게 격식에 맞추어 내주어서 이미 압송해 가도록 했다) ⇨ <원문24:81 번역본70:124>

격조사와 관련된 이두는 번역문에서 대부분 제대로 번역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8) 안병희(2001:5)에서는 ‘吏頭’를 ‘吏讀’의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다른 문헌에서 ‘吏道’, ‘吏刀’, ‘吏吐’, ‘吏套’ 등의 표기도 확인되는 것을 보면, /이두/를 표기하는 표음자(表音字)로서의 한자(漢字)는 반드시 ‘吏讀’일 필요는 없었고, 소리가 비슷한 한자들을 자의적으

자료로서, 글자의 수효별로 한글 독음이 제시되어 있는 문헌이다. 편찬 시기는 정조 9년(1785년) 이후 헌종 10년(1844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류탁일 1990, 김봉좌 2005, 전경목 2006, 김종철 2016). 『儒胥必知』의 부록에 244항목의 이두가 『吏頭彙編』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두 어휘 자료집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儒胥必知』는 당시 다량으로 인쇄되어 보급되고, 민간에서 거듭 출판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김종철 2016:261), 이 책이 당대에 끼친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儒胥必知』는 당대에 行用되던 문서의 서식을 예시하여,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정적·관습적으로 인정된 문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용례집 같은 책이었다. 부록으로 제시된 『吏頭彙編』은 문서 작성에 필요한 이두 목록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인데, 책의 성격상 여기에 제시된 이두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꼭 필요하거나 많이 활용되는 목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는 물론 근대이행기까지도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문을 사용하여 소통하였으나 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는 관습적으로, 정해진 양식으로, 이두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당대의 문서 작성자들은 이두를 익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자료를 대비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일반인이 작성하고 관청이 독자가 되는 문서에서의 이두의 사용양상과 관청에서 작성하고 임금이 독자가 되는 문서에서의 이두의 사용양상의 異同을 살펴 『推案及鞫案』의 이두의 특징적인 사용양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특별히 종결 표현과 관련된 이두를 살펴보는 것은 문서의 종결 부분의 활용 형태에서 문법형태소를 표기하는 이두의 특징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문의 용언 구절에 결합된 ‘敎’, ‘白’, ‘是’, ‘爲’를 포함하는 이두 표현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는 『吏頭彙編』(儒胥必知: 332)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근거한 것

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도 하다.

- (1) 大抵吏吐 臣告君賤告貴 則皆加白字 又用教是等語 是字爲字 隨勢改換爲好 (대저 이두는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거나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고할 경우 모두 ‘白’자를 더하거나 ‘教是’등의 말을 덧붙인다. ‘是’자와 ‘爲’자는 문맥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1)을 이두 문헌에서 ‘教’, ‘白’, ‘是’, ‘爲’와 관련된 서술부 용례가 가장 많다는 설명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형태를 포함한 이두 표현을 살피는 것이다. ‘教’, ‘白’, ‘是’, ‘爲’가 포함된 형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教是白去乙’과 같이, ‘教’, ‘是’, ‘白’이 겹쳐 결합한 경우에는 가장 앞에 나온 형태의 예로 분류한다. 『推案及鞫案』과 『吏頭彙編』의 이두 목록을 대비하는 2장에서는 ‘教’, ‘白’, ‘是’, ‘爲’를 포함하는 이두 표현 전체를 살피고, 문맥에서의 구체적인 사용양상을 살피는 3장에서는 ‘教’ 관련 이두 표현을 중심으로 살핀다.

(3) 선행 연구

『推案及鞫案』이라는 역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문 문장 속에 국어적 요소가 혼효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및 한문 전공자들이 이 자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여 주석하거나 번역한 결과를 축적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국어 및 국어사적 요소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거나 다룰 수 없었다. 여기에 국어사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번역본 작업을 통해 국어학적 지식이 없이는 그 내용과 표현을 직접적(직역)으로 정확하게 옮기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의 이두에 대해서는 『大明律直解』를 중심으로 박희숙(1985), 고정익(1992), 한상인(1998), 박철주(2003), 강영(1998), 배대은(2002) 등이

있다. 남풍현(1981:5-11)은 차자표기는 표음문자(表音文字)와 표의문자(表意文字)의 혼합체계(混合體系)로서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사 자료라고 설명하였고, 이승재 외(2006:48)에서는 구결을 비롯한 차자표기는 한문을 自國語化하여 읽으려는 노력의 일환(一環)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한자를 차용한 이두 표기를 한글 창제 이전에,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번역문에 주로 쓰인 표기법으로 이해한 설명이다. 그러나 『推案及鞫案』은 기술 상황을 기록한 필사본이고, 한글 창제 이후의 기록문이다. 『推案及鞫案』은 한문에 대한 번역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두에 대한 설명으로는 영역 밖의 문헌인 것이다.

박성중(2016)에서는 조선 건국에서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이두 자료를 망라하여 전적들과 고문서들을 대상으로 이두 형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推案及鞫案』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작성된 거질 자료에 대하여 통시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안병희(2001:8)에서 『吏讀便覽』⁹⁾의 제2항에 제시된 編纂의 목적에 주목하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吏讀가 비록 변화가 있으나 文書에는 아직도 사용되어 文脈을 밝혀주고 있어 屍體의 檢案書나 獄事의 調書는 이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2)의 내용은, 한글이 창제되어 우리의 문자가 이미 생겼고, 이전 시기의 것과 형태도 달라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사용을 정형화하려는 것은 사건의 처리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밝힌 것이다. 이두를 번역할 때에 文套 및 樣式을 의식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9) 一字類~十字類까지 모두 300 조항 가량의 이두 항목과 그 독법을 보인 문헌으로 官府의 문서에 필요한 吏讀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중학(1995:12-17)은 신라와 고려의 이두만을 다루었고, 14세기 말 『大明律直解』를 통해 이두의 형식이 굳어졌다고 설명하였다. 이두는 사원이나 관청의 기록문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어사(語辭)나 문자가 대개 중복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식에 맞추어진 표기 형태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계속 사용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설명에 이어 이두 문헌에 대한 연구는 文語(written language)¹⁰⁾ 연구라고 규정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구어를 문자로 표기한 written records의 개념을 이두 연구에서는 배제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推案及鞫案』은 기존의 이두 연구자들이 제외시켰던 바로 그 written records 문헌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두 토 자체는 공초기록문서로서의 틀을 따른 보수적인 양식이지만 한문과 이두가 혼용되어 SVO 문장과 SOV 문장이 병존하는 동시에 의성·의태어, 유언 비어처럼 떠도는 노래(시조) 등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推案及鞫案』이 written records 문헌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¹¹⁾. 『推案及鞫案』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이렇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대상인데, 본고에서

10) 심사자 한 분께서 ‘文語를 written language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고, literary language로 번역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주셨다. 필자는 ‘colloquial’의 상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oral’의 상대 개념으로서 ‘written’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수정하지 않았다.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We would be asserting that there had been no literature before the development of written language.’ (Hunggyu Kim Translated by Robert J. Fouser, 1997:10)

11) 한 심사자께서 『大明律直解』의 이두 토도 표기나 형태, 문체 면에서 조선 전기보다 이전의 한국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등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正祖代 『推案及鞫案』의 이두 토도 18세기 한국어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한국어의 문법 형태소(‘-齊’, ‘-在’, ‘亦’ 등)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어 『推案及鞫案』 역시 문어 이두 문헌이라고 지적해주셨다. 타당한 지적이다. 텍스트에서 낱말의 이두 요소만을 뽑아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推案及鞫案』의 작성 상황과 한문, 이두와 함께 한글로 표기된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한자 표기가 곤란한 부분(의성어, 의태어, 노래 등)을 고려하여, 즉 한문 및 한글 표기와 어우러지는 이두를 옆두에 두며 『推案及鞫案』은 『大明律直解』와 같은 번역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문헌이라고 보고 있다. 『推案及鞫案』의 written records 텍스트로서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다음 연구로 진행 중이다.

는 written records 문헌에 대한 연구는 且置하고, 문서 양식으로서의 이두를 살펴며 그 사용양상을 비슷한 시기의 『吏讀便覽』의 목록과 대비하여 그 異同을 살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2. 이두 목록의 대비

『推案及鞫案』 23권과 24권에서 확인된 ‘敎’, ‘白’, ‘是’, ‘爲’가 포함된 이두의 예를 기존의 이두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낱낱의 형태는 객체존대와 관련된 요소가 많다. 그러나 국어사적으로는 16세기 이후 객체높임의 의미 및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 객체에 대한 주체의 겸양보다는 청자(상대)에 대한 화자의 겸양, 또는 청자 높임으로 변화되었다. 이로써 오늘날 한국어에는 객체 높임을 위한 문법형태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또, 객체높임을 위한 체계적인 장치도 점차 사라져 현대국어에서는 특정 어휘에 의해(계시-, 드리-, 모시-, 여쭙-, 아뢰-, 잡수시-, 주무시- 등) 객체 높임이 산발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어사적 사실은 본고의 연구대상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白-’이 객체높임으로 사용되지 않고, 상대높임으로 쓰인다.

연구 대상 자료의 가공에 있어 먼저, 입력된 영인본 『推案及鞫案』을 권차와 페이지별로 정렬하고, ‘敎’, ‘白’, ‘是’, ‘爲’를 포함한 이두 표현을 찾아 표시하였다. 이후, 해당 구문을 직접 텍스트 문맥에서 해독하여 그것이 온전한 이두의 예인지 확인한 후 대비 목록을 추출하였다(<그림 2>).

心腸敢以無臣節三字無難遲晚是喻此陵無臣節之窮凶情節無敢隱諱一一遲晚納招亦推問【教是臥乎在亦】罪人尹九宗刑問二次訊杖三十度矣身不下馬於莫重處凶悖之說肆然發口是不忠也即平日無臣節所致以此遲晚相考處置教事教味白侂是白臥乎在亦向前罪人尹九宗亦以一批旨內辭意發問目各別嚴刑反覆盤詰則只以不忠無臣節遲晚其間陰凶情節終不輸款更加嚴刑取服何。」

204 <권24_737> 得以知之萬古天下名之曰大義無難自異則是其心術甚於乙丙以前無知妄作之徒究厥負犯誅殛猶輕爲先刑推推問爲去乎無敢隱諱箇箇直招亦推問【教是臥乎在亦】罪人鄭好仁供曰矣身萬萬無狀萬萬不似致位至此莫非國恩感泣二字猶屬泛然況今年恩養

<그림 2> 『推案及鞫案』에서의 이두 목록 추출 예

<그림 2>의 좌측에 표시된 숫자는 추출된 이두의 개수이다. 정렬된 텍스트를 에디터와 문맥색인 도구를 이용하여 대응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推案及鞫案』의 이두 목록을 『吏頭彙編』에서 설명하는 목록과 대비하였다(<그림 3>).

六字類」

○ 爲有置有等以 호잇두이신들로」

<뜻> -하였음도 있는 줄로, -하였기도 한 줄로, -하였음도 있는 바로, -하였기도 한 바로」

」

○ 爲自有如乎事 호습잇다온일」

<독음> 호살잇다온일, 호습잇다온일, 하습잇다온일 <뜻> -하였살다는 일, -하습살다는 일」

」

○ 教是臥乎在亦 이신누온견이여」

<독음> 이산누온견여, 이산누온견이여, 이신누온견이여 <뜻> -이옵시는 것이어요,

<그림 3> 『吏頭彙編』의 이두 목록 예

에디터의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가공된 자료를 EXCEL 파일로 전환하여 개별 어휘별 검색과 자료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자료로 『推案及鞫案』과 『吏頭彙編』의 이두 목록을 대비하여 그 중복성을 살핀다. 『推案及鞫案』에서 확인된 목록을 중심으로 『吏

頭彙編』의 목록과 대비할 것이며, 『吏頭彙編』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두자료 읽기 사전』(장세경 2001)에서 다시 확인한다¹²⁾. 이는 『推案及鞫案』에서만 확인되는 이두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확인된 형태 앞에 붙인 표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는 『推案及鞫案』과 『吏讀彙編』에서 모두 확인된 것, ‘■’는 『吏讀彙編』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推案及鞫案』과 『이두자료 읽기 사전』(장세경, 한양대 출판부, 2001)에서 확인된 것, ‘△’는 『推案及鞫案』에서만 확인된 것이다. 『吏讀彙編』의 목록은 『이두자료 읽기 사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推案及鞫案』의 목록을 『吏讀彙編』과 먼저 대조하였다.

『推案及鞫案』에서 ‘教’가 포함된 이두 형태는 13종류로, ‘● 教事, ● 教是, ● 教是臥乎在亦, ● 教矣, ● 教是臥乎在亦, ■ 教是旡, ■ 亦教是置, ■ 教是置, ■ 教是遣 ■ 教是去乙 ■ 亦教是白乎等¹³⁾, △亦教是白乎旡, △ 教是置有亦’가 확인된다.

‘教是置有亦’는 『推案及鞫案』에서만 확인되는 형태인데, 기존 사전에 ‘教是置’와 ‘有亦’이 각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吏頭彙編』에서만 확인되는, ‘教’가 포함된 이두 형태에는 ‘教味白齊, 教是白去乙, 教是白在果, 教是事, 教是在如中’ 5개가 있다.

『推案及鞫案』에서 ‘白’이 포함된 이두 형태는 3개로¹⁴⁾, ‘● 白等, ● 白是, ● 白齊’가 확인된다.

그러나 ‘白’은 상대높임 표현으로서, ‘教’, ‘是’, ‘爲’ 등과 함께 결합하는

12) 『이두자료 읽기 사전』(장세경 2001)은 ‘<http://kostm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두의 사전 자료이기에 이를 참고하였다.

13) 『推案及鞫案』에서 ‘亦~’는 인용구문으로, ‘~亦’는 연결어미로 이해된다.

14) ‘白活’도 검출되었으나 이것은 어원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므로 대비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경우가 많다. 『吏頭彙編』에서만 확인되는 ‘白’ 포함 이두 형태에는 ‘望良白去乎, 望良白內臥乎事, 望白良尔, 使內白, 使內白如乎’로 5개가 있다. ‘白’은 주로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습/줍/습-, -스오/즈오’ 등으로 읽히고, 객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쓰였는데, 『推案及鞫案』에서는 다양한 용례가 확인되지 않고, 상대존대의 의미로 쓰인 예만 확인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18세기 후반 正祖代의 문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推案及鞫案』에서 ‘是’가 포함된 이두 형태는 25개로, ‘● 是去乙, ● 是遣, ● 是乃, ● 是良置, ● 是白去乙, ● 是白良置, ● 是白沙餘良, ● 是白置, ● 是白置有亦, ● 是白乎乃, ● 是白乎等以, ● 是白乎旆, ● 是如, ● 是如乎, ● 是喩, ● 是在果, ● 是置, ● 是乎喩, ● 是乎矣, ■ 是白如乎, ■ 是白遣, ■ 是白乎矣, ■ 令是白乎矣, ■ 是白如乎, ■ 是白遣’가 확인된다.

『吏頭彙編』에서만 확인되는 형태에는 ‘是去是良尔, 是去是乎等以, 是去有等以, 是良結, 是良尔, 是良沙, 是白去乃, 是白去乎, 是白昆, 是白良尔, 是白良沙, 是白良置, 是白如中, 是白臥乎所, 是白有亦, 是白有齊, 是白在亦中, 是白乎味, 是沙, 是沙餘良, 是亦在, 是隱去向入, 是乎味, 白是, 的是, 退是’로 27개가 있다.

『推案及鞫案』에서 ‘爲’가 포함된 이두 형태는 30개로, ‘● 爲去乙, ● 爲去乎, ● 爲昆, ● 爲旆, ● 爲白去乙, ● 爲白去乎, ● 爲白遣, ● 爲白如乎, ● 爲白有在果, ● 爲白在果, ● 爲白乎, ● 爲白乎旆, ● 爲白乎事, ● 爲白乎矣, ● 爲所, ● 爲臥乎, ● 爲喩, ● 爲有去乙, ● 爲有如乎, ● 爲有置, ● 爲只爲, ● 爲乎, ● 爲乎旆, ● 爲乎矣, ● 當爲, ■ 爲行, ■ 爲乎, ■ 爲是, ■ 如爲, ■ 乎爲’가 확인된다.

『吏頭彙編』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는 ‘爲去乃, 爲去等, 爲去等易亦, 爲

等良, 爲良結, 爲良置, 爲白去等, 爲白昆, 爲白內等, 爲白等, 爲白良, 爲白良結, 爲白良尒, 爲白良沙, 爲白良喩, 爲白良以, 爲白良置, 爲白沙餘良, 爲白如可, 爲白如教, 爲白臥乎味, 爲白臥乎事, 爲白有去乙, 爲白有去乎, 爲白有昆, 爲白有如乎, 爲白有如乎事, 爲白有亦, 爲白有置, 爲白在如中, 爲白在而亦, 爲白齊, 爲白置, 爲白乎所, 爲白乎喩, 爲白乎在亦, 爲白乎弟亦中, 爲沙, 爲是遣, 爲臥乎等以用良, 爲有置有等以, 爲在, 爲齊, 爲巴只, 爲行如可, 爲乎良以, 爲乎味, 爲乎所, 爲乎乙所, 矣身向爲良'과 같은 형태가 있다.

巨帙의 『推案及鞫案』에서 확인되는 '教', '白', '是', '爲' 결합형 이두의 종류는 『吏頭彙編』에 실린 것보다 적는데, 이는 『推案及鞫案』이 갖는 문헌적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吏頭彙編』은 일반인을 비롯한 儒者와胥吏가 문서 작성을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文簿를 비롯하여 上言, 所志, 議送 등 다양한 방면의 문서 내용과 형식에 필요한 이두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推案及鞫案』은 죄인들의 '審問 - 陳述 - 刑訊 - 再審 - 結案 - 照律 - 處置'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대상이 바뀔 뿐 반복되는 문형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두도 반복형으로 사용되어 그 종류가 적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推案及鞫案』에서만 확인되는 이두가 거의 없고¹⁵⁾, 방대한 자료임에도 활용된 이두의 종류가 더 적게 확인되는 것은 『推案及鞫案』이 吏胥들이 작성한 공초기록문서로서 그 정형성이 확고했던 문서였기 때문인 것이다.

15) '△'로 표시된 몇 예가 있으나 이는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이두의 조합형이다.

3. 『推案及鞫案』의 어미

『推案及鞫案』에서 이두가 활용된 서술부를 살피기 위해 활용 빈도가 높은 ‘敎’, ‘白’, ‘是’, ‘爲’ 결합형 이두 목록을 뽑아 2장에서 살펴보았다. ‘白’은 ‘白活’과 같이 명사나 (존대) 선어말어미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고는 『推案及鞫案』의 서술부와 활용 어미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된 지면이기에 且置하였다. ‘爲’는 ‘毋敢一毫隱諱箇箇直告【爲旆】’나 ‘汝以可據明證更爲詳思以告【爲旆】’ <원문 23:642 번역본 68:108>’에서와 같이 ‘直告’나 ‘告’와 결합된 예가 많기는 하지만 선행 한문구와의 결합에 특별히 제약을 받지 않고 두루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爲’ 또한 다음 논문의 과제로 남긴다. ‘是’는 (예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술어부에 두루 사용되는 예로서, ‘爲’와의 대비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장에서는 ‘敎’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이두 결합 형태와 문형을 살핀다.

(1) 敎事を 포함한 문장

『推案及鞫案』 23권(1777년-1782년) ~ 24권(1782년-1796년)에서 ‘敎事’는 686번 확인되는데, 모두 ‘相考慮置’ 뒤에 결합되었다. 역으로, 대상 자료에서 ‘相考慮置’를 검색해보면 687개가 확인된다. ‘敎事’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 확인되는데, ‘敎事’가 아닌 ‘敎是’가 결합되었다. 번역본에는 ‘잘 살펴 처리하실 일입니다’로 두 경우를 똑같이 번역하였다. 검토 영역을 넓혀 살펴보면 ‘敎是’가 더 많이 확인될 수도 있으나 예가 하나뿐인 것을 보면, 校勘 대상일 가능성도 있다.

- (3) ㄱ. 相考慮置【敎事】○ (잘 살펴 처리하실 일입니다) <원문 23:13/18/20... 번역본67:43/51/53...>
 ㄴ. 相考慮置【敎是】○ (잘 살펴 처리하실 일입니다) <원문24:553,

번역본72:101>

ㄷ. 相考處置施行【教味白齊】○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원문24:262, 번역본70:375>

(예3)을 보면, (3ㄷ)의 경우는 ‘相考處置’ 다음에 ‘施行’이라는 서술구가 다시 결합되어 敎事나 敎是가 아닌 ‘教味白齊’가 결합되었다. 즉, 선행 요소가 무엇이나에 따라 이두가 달리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독자 인 임금을 고려한 극존대의 표현으로 이해되는데, ‘相考處置’에 직결되는지의 여부가 ‘教味白齊’의 결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두 학습서 및 사전을 보면, ‘敎事’나 ‘敎是’를 존칭의 주격조사로 활용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推案及鞫案』에서는 주격조사의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推案及鞫案』에서의 ‘敎事’나 ‘敎是’는 대부분 종결 표현에서 확인된다. (예3)과 같은 문장은 모두 한 사건의 심문 과정에 대한 종결문이다. 심문 과정을 끝내고 ‘이 내용을 고려하여 처치할 임금께 올리는 글이므로 주체에 대한 극존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在白敎是去等’과 같은 표현에서 확인되는 ‘敎是’를 조선시대 이두학습서인 『吏文大師』, 『儒胥必知』, 『典律通補』, 『역대이두사전』 등에서는 ‘이시-’로 독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결문에서의 ‘只, ㄱ/기’가 없어지면서 와전된 것으로(남풍현, 2017:163), 임금에 대한 극존대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ㄱ. *因傳【敎事】停刑(전교에 따라 매질을 멈추었다) <원문23:642
번역본69:108>

ㄴ. 從實直告亦推問【敎事】臥乎在亦(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심문한다. 하니) <원문23:96 번역본67:189>

(4ㄱ)는 이두가 아닌 ‘敎事’가 산출된 것이며 (4ㄴ)은 ‘敎事’가 아니라 ‘敎事臥乎在亦’의 일부인데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돌려 ‘敎事’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 출력된 예들이다. (4ㄱ)은 ‘因傳敎事 停刑’으로 읽어야 할 것으로, 한문에서 본용언 ‘傳敎’가 ‘事’를 수식하는 구조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4ㄴ)의 ‘敎事臥乎在亦’은 ‘推問’에 결합된 한 덩어리의 이두 표현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나 기존 사전에는 ‘敎是臥乎在亦’, ‘爲臥乎在亦’, ‘是白臥乎在亦’, ‘亦敎是臥乎在亦’, ‘亦爲白臥乎在亦’, ‘爲白臥乎在亦’, ‘敎味白俵是白臥乎在亦’, ‘白俵是白臥乎在亦’, ‘白俵音是白臥乎在亦’ 등의 형태는 등재되어 있지만 ‘敎事臥乎在亦’는 확인되지 않는다. ‘敎事臥乎在亦’는 『推案及鞫案』에서만 확인되는 예이다. 다만 (5ㄱ)과 같이 ‘敎是臥乎在亦’ 대부분이 (4ㄴ)의 ‘敎事臥乎在亦’과 같이 ‘推問’에 결합된 것과 (3ㄴ)과 같이 ‘敎事’가 쓰이는 위치에 ‘敎是’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敎事’를 [이시(ㄴ) 일 누오견여]와 같이 ‘-이시-’로 해독하여 ‘敎是’와 서로 대치 가능한 것으로 쓴 것이거나 校勘 대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敎是를 포함한 이두 형태

‘敎是’ 및 ‘敎是’를 포함한 이두 형태는 『推案及鞫案』 23-24권에서 총 231개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推問 【敎是臥乎在亦】 供曰~(“~심문한다” 하니 진술하기를~)’과 같이 ‘推問’에 결합된 것으로 확인된다. ‘敎是’ 결합 형태 중에서 ‘推問’과 결합되지 않은 예는 (5ㄴ)~(5ㄹ)에 해당하는 12개뿐이다.

(5) ㄱ. 問目內辭緣隱諱除良從實直告亦推問 【敎是】 臥乎在亦(문목(問目) 안의 죄상에 대해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심문한다.) <원문23:18 번역본67:51>

ㄴ. 推問事傳敎 【敎是遣】(심문하도록 하라.’ 라고 전교하셨다.) <원문23:747 번역본69:266>

- ㄷ. 此是下教內事意【教是置】奉審舉行後(이는 하교(下教) 내용에 따른 것이니, 받들어 살펴 거행한 뒤에) ⇨ <원문24:260 번역본70:372>
- ㄹ. 速直告事傳教【教是置】(빨리 바른대로 아뢰도록 하라.’라고 전교하셨다.) <원문23:751 번역본69:272>
- ㄱ. 捧結案以聞事 傳教【教是置】(결안(結案)을 받아서 보고토록 하라.’라고 지시하셨다.) ⇨ <원문23:743 번역본69:259>
- ㄴ. 嚴加盤問亦傳教【教是置有亦】(엄히 매질하며 철저히 캐물어 야 옳을 것이다.’라고 지시하시었다.) ⇨ <원문23:370 번역본68:82>

- ㄷ. 捧結案舉行【亦教是白乎拏】(결안(結案)을 받는 일을 거행토록 하라.’하셨으며) ⇨ <원문24:081 번역본70:124>
- ㅇ 卽爲押送【亦教是白乎拏】(즉각 압송해 가도록 하라.’하셨고) ⇨ <원문24:081 번역본70:124>
- ㄷ. 舉行【亦教是白乎等】(거행토록 하라.’하셨다.) ⇨ <원문24:081 번역본70:124>
- ㅅ. 卿等卽爲開坐舉行【亦教是置】 등이 즉각 추국하는 자리를 열어 거행하도록 하라.’ 하셨다.) ⇨ <원문24:715 번역본72:322>
- ㅋ. 分付該府【亦教是置】(의금부에 분부하라.’ 하셨다.) ⇨ <원문24:706 번역본72:311>

- ㅌ. 實是國家莫大之恩【教是去乙】(이는 정말로 나라에서 막대한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하겠다.) ⇨ <원문24:261 번역본70:373>

(5ㄴ)~(5ㄷ)은 ‘傳教’와 ‘下教’에 결합된 예이고, (5ㄷ)~(5ㅋ)은 ‘~舉行’ 류에 결합된 ‘亦教是-’ 이두 형태들이다. ‘亦教是置’는 『吏頭彙編』에서 확인되지 않고, 『推案及鞫案』 23-24권에서 8개의 예가 확인되는 인용구문이다. 『吏頭彙編』 목록에는 없지만 한국학자료센터의 이두용례사전에서 ‘亦教是置’를 검색해보면 19세기 후기 자료에서도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儒胥必知』가 서식 편람이기 때문에 ‘亦-’의 인용 구문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吏頭彙編』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⁶⁾. ‘推問’과 결합되지 않은 예들은 ‘-遣’, ‘-置/白置’, ‘-拈’, ‘-白乎拈’, ‘-去乙’ 등의 다른 이두 형태와 결합하여 인용 구문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다.

- (6) ㄱ. 卽伏王章【亦教是臥乎在亦】(즉각 국법의 처형을 받도록 하라.” 했다.) ⇨ <원문23:751 번역본69:272>
- ㄴ. 遲晚納招爲拈共謀徒黨亦爲一一直告亦各別嚴刑究問【教是臥乎在亦】(지만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함께 모의했던 패거리 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하나 바른대로 아뢰도록, 각별히 엄히 매질하며 철저히 심문한다.) ⇨ <원문24:266 번역본70:379>
- ㄷ. 箇箇遲晚納招【教是臥乎在亦】(날날이 지만(遲晚)하는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하니 ⇨ <원문23:195 번역본67:316>
- (7) ㄱ. 推問【教是】師乎在亦 ⇨ <원문24:419> ‘師’은 ‘臥’이 잘못 입력된 것이다.
- ㄴ. 推問【教是】臥科在亦 ⇨ ‘乎’가 ‘科’로 잘못 입력되었음. <원문 23:532 번역본68:334>
- ㄷ. 惟問【教是】臥乎在亦 <원문23:661> ⇨ ‘推’가 ‘惟’로 잘못 입력되었다.

‘(亦)教是臥乎在亦’ 혹은 ‘教是臥乎在亦矣’는 『推案及鞫案』 23-24권

16) 한 심사자께서는 (5ㄱ-ㄷ)의 ‘亦教是-’ 이두 형태 중 ‘亦’은 ‘是 如 ㄱ 十種 乙 名 ㄱ 內外 乙 依 ㄱ 生 圓 滿 ㄱ ㄱ 1’에서와 같이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쓰이는 인용조사 ‘ㄱ/ㄱ(여);[亦의 생획자]와 동일한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용조사 ‘여’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법형태소로, 『推案及鞫案』이 보수성을 띠는 이두 문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빈번히 쓰인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후기가 지도 쓰인 사실과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내용인 것으로 생각된다. 심사자의 꼼꼼한 지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에서 총 204개가 확인되는데 ‘敎是’와 마찬가지로 推問에 결합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의 예는 (6ㄱ)~(6ㄷ)이 전부이다. (예7)은 현재 구축된 『推案及鞫案』의 DB에서 확인된 오류 부분이다.

국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敎是’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推案及鞫案』의 번역본을 보면, ‘敎是’와 관련하여 (예5)~(예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존칭동사로서의 의미를 살려 존칭 어미로 번역하기도 하고, 비존칭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敎是’와 같이 분명한 특성을 갖고 빈번하게 출현하는 이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존칭의 의미를 살피 번역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敎’ 결합형 이두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서술부에 ‘-敎-’가 결합된 문장의 주체는 임금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체높임법과 관련된다. (예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推案及鞫案』에서 ‘-白-’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敎-’가 선행하는데, 높임선어말어미의 결합 순서의 변화(-습시->-시습-)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 범위가 18세기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 과거 표지인 ‘-有-’나 ‘-去-’, ‘-如-’보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臥(乎)-’와 결합된 ‘-敎-’의 예가 더 많은데, 이는 『推案及鞫案』이 신문 과정을 현장에서 기록한 대화문 구성으로, 사실을 기술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敎’ 결합형 이두 표현의 종결 어미로는 ‘-是-’와 인용구절과 관련된 ‘-亦-’와 결합된 예가 더 많다. 이는 『推案及鞫案』에 流言蜚語와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정리해보면, 『推案及鞫案』의 이두 사용양상은 국가기록문서로서의 양식으로 반복된 표현이 많고, 앞선 시기의 律書인 『大明律直解』의 이두보다 간소화되었으며, 流言蜚語와 관련된 인용구절이 많고, 발화 현장의 구어를 문자로 표기해 남긴 문헌으로서의 특징이 드러난다.

4. 맺음말

『推案及鞫案』은 한문, 이두, 한글이 혼용된 형태로 작성된 供招記錄文이다. 앞선 시기(고려시대나 조선 전기까지)의 이두 자료에서보다 통사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현대어 요소가 더 뚜렷해지고, 국가기록문서로서의 패턴화된 양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推案及鞫案』이 정형화된 書式 및 文套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문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두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한문구 ‘相考處置’ 뒤에는 ‘敎事’가 결합하고, 대부분의 ‘推問’ 뒤에서는 ‘敎是’를 포함한 이두가 결합되는데, ‘(亦)敎是臥乎在亦’ 혹은 ‘敎是臥乎在亦矣’가 결합되어 있다. 또, ‘推問’에 ‘敎事臥乎在亦’이 하나의 패턴처럼 결합되어 있기도 한데, ‘敎事臥乎在亦’는 『推案及鞫案』에서만 확인되는 예이다. ‘敎是’와 ‘敎事’의 대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推案及鞫案』은 죄인에 대한 ‘심문-형신-답변’ 구조로 구성되었는데, 최종 독자가 왕임을 전제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높임의 ‘-白-’과 주체높임의 ‘-敎-’ 및 ‘-敎是-’가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이들의 조합형이 ‘-白敎(是)-’이 아닌 ‘-敎(是)白-’으로 나타나는 것이 正祖代 『推案及鞫案』에서의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推案及鞫案』의 문장 패턴을 이두 형태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2장에서 문장에서 서술부에 쓰인 ‘敎’, ‘白’, ‘是’, ‘爲’를 대상으로 『吏讀便覽』의 이두 목록과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형태소 각각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고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서술부 표현’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특정 한문 구문과 특정 이두의 결합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推案及鞫案』의 이두가 이전 시기에 비해 간소화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언어 연구는 패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엄밀

하계는 『推案及鞫案』을 전체적으로 살핀 이두 연구라기보다는 원문 23권과 24권(번역본 67권~72권)에 한정된, 정조대 이두에 대한 연구이고, 정조대 獄事 調書의 문형 패턴, 즉 이두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推案及鞫案』에 대한 왕조별, 시대별 대조 연구가 진행되어, 이두 형태에 대해서도, 문서 양식에 대해서도, 문체 변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推案及鞫案』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고, 이두 연구가 깊어지면 근대국어 시기까지 한문, 한글과 함께 쓰인 이두의 통시적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이 문헌의 국어학적 연구 의의가 있다. 한편, 『推案及鞫案』의 죄인의 진술 부분에서 확인되는 한글 표기 단어, 구절, 시조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배대운(2003), 『歷代이두사전』, 형설출판사.
 변주승 역주(2014), 『推案及鞫案』 67~72, 흐름출판사.
 전경목, 김건우 외(2006), 『儒胥必知』, 사계절.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78), 『推案及鞫案』, 亞細亞文化社 影印.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2. 연구 논저

강영(1998), 『<大明律直解>의 이두의 어말어미 연구』, 국학자료원.
 강전섭(1972), 『『유서필지』에 대하여』, 『어문학』 27, 한국어문학회, 13~26면.
 고정의(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정의(2003),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223~252면.
 김건우(2008),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김두황(1995), 조선초 초기의 이두 연구:『대명률직해』와 『양잠경험촬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좌(2005), 『『유서필지』 판본 연구』, 『서지학보』 29, 한국서지학회, 137~160.
 김영만(1980), 儒胥必知의 吏讀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김우철(2015), 『『推案及鞫案』 번역과정에서의 校勘 사례』, 『고전번역연구』 제6집, 한국고전번역학회, 59~84면.
 김중철(2016), 『작문 교재로서의 『유서필지』』, 『국어교육연구』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255~310면.
 김주필(2007), 『19世紀 末 國漢文의 性格과 意味』, 『震檀學報』 103, 震檀學會, 193~218면.
 남풍현(1978), 『訓民正音과 借字表記法과의 관계』, 『국문학논집』 9, 단국대, 3~26면.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研究』, 단대출판부.
 남풍현(2017),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난 동사 ‘ㄱ/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하여』, 『조선시대 이두 학습서와 이두』, 제52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발표집, 159~170면.
 류탁일(1990),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박병채(1966), 『鄉札과 吏讀의 개념정립에 대하여』, 『어문논집』 제9권, 민족어문학회,

14~33면.

- 박성중(2016), 『朝鮮前期 吏讀研究』, 역락.
- 박철주(2003), 대명률직해의 구문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형익(2003), 『『유서필지』의 ‘이두휘편’』,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313~326면.
- 박희숙(1985),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대온(2002), 『이두문법소의 통시적 연구』, 경상대학교 출판부.
- 서중학(1991), 이두의 문법형태 표기에 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중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안병희(1988), 『이문과 이문대사』, 탑출판사.
- 안병희(2001), 『『吏讀彙編』에 대하여』, 『書誌學報』 25, 한국서지학회, 5~35면.
- 이승재(1990), 고려시대의 이두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전경목(2010), 『이두가 포함되어 있는 고문서 번역상의 몇 가지 문제점』, 『고전번역연구』 제11집, 61~95면.
- 정광호(1975), 『<解題> 推案及鞠案』, 『민족문화』 1, 116~138면.
- 최범훈(1974), 『『유서필지』고』, 『새국어교육』 18, 한국국어교육학회, 152~166.
- 한상인(1998), 『조선 초기 이두의 국어학적 연구』, 보고서.
- 홍고테우오(2002), 『이두 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순탁(1959), 『이조시대의 借字表記法 體系 研究 試論』, 『국어국문학』 제20권, 국어국문학회, 44~48면.
- Kim Hung-Gyu Translated by Robert J. Fouser(1997),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New York: M. E. Sharp.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조선왕조실록

<http://kostm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

<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the usage pattern of I-DU found in *CHUAN GEUP GUKAN* during King Jeongjo era

Yu, Kyung-min*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hape and the categories of I-DU found in *CHUAN GEUP GUKAN* in order to apply to the usage of I-DU in the Official Documents of late Joseon era.

CHUAN GEUP GUKAN is primarily written in Chinese but we can identify grammar structures formed in Korean word order and Korean grammar elements, few nouns, and verbs marked in I-DU. As a whole, *CHUAN GEUP GUKAN* features general document form.

Unlike the past, 18th century I-DU seems to be a customary to the official documents rather than being an indivI-DUal grammar unit. *CHUAN GEUP GUKAN* is a document written by UIGEUMBU in order to report to the king the result of interrogating convicts. In the process, each structure of the sentences related to the situation is finished with I-DU.

Korean language has maintained its tradition of using Chinese or I-DU even after the invention of Hangeul. Nevertheless,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Korean Textual Characters has focused mainly on the dual structure of Chinese (or Chinese characters) and Korean. This is an attitude neglecting the fact that I-DU was used in official documents and practical writings up to early 20th century. This paper has begun by reflecting on that attitude.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not so illuminated side of Korean, especially the usage and notation of I-DU in Korean history.

*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E-mail : cherubyu@naver.com

Study of language is a scientific approach to patterns.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ill examine I-DU used in *CHUAN GEUP GUKAN* as a sentence patterns. Specifically, we will examine I-DU that connects to the descriptive words of the sentences, such as '-教-', '-白-', '-是-', '-爲-'.

Key word

CHUAN GEUP GUKAN, I-DU, usage, Official Documents, Chinese, Korean history

본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7년 11월 27일 심사완료하고,
2017년 12월 2일 게재를 확정하였음.